

범주: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발행일: 09/12/11 번호: **D-170**  
주제: 공석 처리 방법을 포함한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출 절차 페이지: 5의 1

## 개요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Citywide Council on English Language Learners: CCELL)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11인의 위원 및 투표권이 없는 1인의 학생 위원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을 가진 9인의 위원들은 반드시 본 규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선출된 이중언어 또는 제 2언어로서의 영어(ESL) 프로그램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부모여야 하며 기타 2인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뉴욕시 공익 옹호실 (Public Advocate of the City of New York)에서 지명한다. (이하 “공립 옹호실 지명인”) 등이 포함된다. 본 규정서는 CCELL 위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추천과 선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또한 위원직의 공석 발생시 총원 절차를 제공한다. CCELL은 뉴욕주 공개회의 법(New York Open Meetings Law)에 부합하여 모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 I. 자격요건

### A. 학부모 및 공익 옹호실 지명 위원

1.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ELL 학생)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만이<sup>1</sup> CCELL에 본인을 추천할 자격이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 a. 선출직 공무원이나 선출 또는 임명되는 정당의 보직 (전국, 주, 법원 또는 기타 정당 협의회의 의원 또는 대위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은 제외)을 맡고 있는 사람;
  - b. 현직 교육청 직원;
  - c.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뉴욕시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에서 해당 위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이런 위원회 또는 CEC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그리고
  - d. 다른 뉴욕시 위원회 또는 기타 CEC에 소속된 사람
3. 또한 다음의 사람들도 활동 자격이 없다:
  - a. 교육정책 패널 위원;
  - b. PA/PTA, 학교 리더십 팀, 학군 회장 위원회, 보로 고등학교 위원회, 타이틀 I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학교 이사회에서 해당 협회, 팀, 협의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해당 협회, 팀, 협의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그리고
  - c. 교육청 윤리담당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뉴욕시 이해관계 상충 법에 의거, 금전상의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sup>1</sup> 학부모란 부모(출산 또는 입양, 계부와 계모 또는 수양 부모로서), 법적 보호자 또는 아동에게 부모에 해당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의미한다. 부모에 해당하는 관계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대신에 정기적으로 아동의 보호자 후견권을 행사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B. 학생 위원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고등학생으로 활동하는 학년도 동안에 12학년이 되는 고등학교 학생은 CCELL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본 규정서에서는 약 30학점의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12학년으로 간주한다.

II. 학부모 추천

A. CCELL에서 활동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신청서 및 공개 양식을 온라인 [www.powertotheparents.org](http://www.powertotheparents.org)<sup>2</sup>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가추천할 수 있다. 가정참여 지원실(The 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OFEA)은 이 웹사이트에 자가추천 제출 일정을 게시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학부모는 OFEA에 연락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및 인근 협력기관에 관해 문의한다.

B. 각 추천서의 일부(성명,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본인의 배경 및 활동 내역, 개인 성명과 학교 규모)가 학부모 및 일반의 검토를 위해 [www.powertotheparents.org](http://www.powertotheparents.org)에 게시된다.

III. 선출자(SELECTOR)

각 커뮤니티 학교 학군과 보로 및 75학군 회장단에서는 회원들 중에서 ELL 학생 학부모 한 명을 선출하여 CCELL의 선출자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장단에 ELL 학부모가 없는 경우, 해당 회장단은 학군 또는 보로에서 선출자로 활동하기 위해 자원할 ELL 학부모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런 회장단은 자원한 학부모들 중에 한 학부모를 선택하여 CCELL 위원의 선출자로 활동하도록 한다. CCELL에 후보로 출마하는 학부모는 선출자로 활동할 자격이 없다.

IV.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

## A. 후보자 포럼

커뮤니티 학교 학군, 보로 및 75학군 회장단과 협력하여 가정참여 지원실에서는 후보자가 선출자 및 기타 학부모 및 관련 인사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 보로에서 후보자 포럼을 주관한다.

## B. 권고 투표(Advisory Vote)

후보자 포럼 진행 후 75학군을 포함한 각 학군 및 보로에 대한 온라인 권고 투표가 웹사이트 [www.powertotheparents.org](http://www.powertotheparents.org)에서 실시된다. 본 권고 투표는 학군 차원에서 학군 내 학교에 등록된 모든 ELL 학부모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보로 차원에서는 보로 내 고등학교의 모든 ELL 학부모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75학군 권고 투표는 해당 학군 내 모든 ELL 학부모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OFEA는 권고 투표 일정을 게시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ELL 학부모들은 자녀의 OSIS 번호 및 OSIS와 연계된 우편번호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학부모들은 CCELL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의 이름 등이 나타난 투표스크린을 접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최대 9명의 후보자에 관해 구속력이 없는 권고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독립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권고 투표는 각 학군 또는 보로의 투표 결과를 선출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V. 선출 절차

## A. 학부모 위원 선출

1. 선출자는 반드시 [www.powertotheparents.org](http://www.powertotheparents.org)에 접속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일단 접속한 후 선출자는 CCELL 위원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이름이 나온 투표 스크린을 제공 받게 된다. 각 선출자는 2인의 후보에 투표한다. OFEA는 투표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선출자에게 제공한다.

## 2. 투표 결과를 기록할 때:

a. 표를 가장 많이 얻은 9인의 후보들이 자격사항의 증명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떤 학군도 섹션V.A.2.c에 제시된 바와 같은

<sup>2</sup> 학부모는 한 곳의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위원회에만 출마하도록 한다.

경우를 제외하고 CCELL에 1인 이상이 학부모 대표를 배출할 수 없다.

- b. 만약 동일한 학군에서 1명 이상의 출마자가 선출되었다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더 적은 표를 얻은 해당 학군의 기타 후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며 CCELL에 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학군의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조건부로 선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 c. 섹션 V.A.2.b에 설명된 바와 같은 제한은, 제한 규정을 엄수할 경우 10인 이하의 학부모만이 선출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후보들이 동일한 수의 표를 얻은 경우 또는 처음에 9명보다 적은 수의 정원만이 충족된 경우에는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런 경우 각 선출자는 1명에게만 투표한다.
    - a. CCELL의 1개 직책 이상이 동일한 표를 기록하여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동일한 표를 얻은 후보자만이 재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된다.
    - b. 동일한 표를 기록한 것이 아닌 이유로 하나 이상의 정원이 공석이어서 재선거를 시행할 때 이미 선출되지 않은 모든 후보들은 재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 c. 재선거로 모든 공석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의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상기 V.A.3.a 및 V.A.3.b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일한 자격사항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여 추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후보자가 최초 선출절차 및 재선거 모두에서 표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면 공석은 본 규정의 섹션 IX.A.2 및 IX.A.3에 정해진 절차에 부합하여 채워질 수 있도록 남겨둔다.
  4. 선출 절차를 마친 후 선거가 실시된 해의 6월 25일이나 이전에 선출된 후보가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잃게 된다면 최초 선택 절차 기간 동안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었으며 CCELL에 이미 대표를 배출한 학군이 아닌 학군 출신의 후보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sup>3</sup>. 이런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후보들이 동일한 표를 얻게 된 경우 교육청의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을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5.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B. 뉴욕시 공익 옹호실의 지명

뉴욕시 공익 옹호실은 투표권을 가진 2인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두 위원들은 반드시 폭 넓은 영어학습학생의 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뉴욕시 학교들의 이종언어 및 ESL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 C. 학생 위원의 지명 (투표권 없음)

장애학생과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은 이종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1명을 선택하여 수석 성취도 담당관이 개발한 절차를 활용하여 CCELL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 VI. 조건/자격의 검토

학부모 후보의 조건부 선출 후,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 담당자는 후보가 CCHS에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교육감이 후보가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면, 이러한 교육감의 서면 결정이 발표된 지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보로 및 가정참여 지원실의 중앙 사무실에서 일반에 공개하여 공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결정에는 사실 및 해당 발표를 결정하는 법적 기반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감이 어떤 후보를 무자격자로 간주한 경우, 해당 보로에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이미

<sup>3</sup>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6월 25일 이후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서 섹션 IX.A.2 및 IX.A.3의 공석 절차가 적용된다.

CCELL 대표를 선출한 학군 출신으로 활동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보를 대체하게 된다.

## VII. 선거일정

최초 CCELL의 위원 선출은 2010년 5월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1년 6월 30일 끝나게 된다. 차후 모든 CCELL 위원의 선출은 2011년, 2013년 2015년 5월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되며 선거 후 7월 1일 임기가 시작과 함께 2년 마다 한 번씩 실시된다. 이 선출 절차는 90일 동안에 걸쳐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절차 공개, 학부모 추천, 후보자 포럼,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에 의한 권고 투표 및 선출자 투표에 할애되는 시간이 포함된다. 가정참여 지원실은 본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한 일정을 공표한다.

## VIII. 사퇴

### A. 학부모 위원

학부모 위원의 사퇴는 반드시 교육감 앞으로 서면을 발송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감은 수석 가정지원 담당관이 교육감을 대변하여 사퇴를 수리하도록 지명한다. 사퇴는 수석 가정지원 담당관에게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의 미래의 특정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한다.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퇴를 철회,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 B. 공익 옹호실 지명 위원

공익 옹호실이 지명한 위원의 사퇴는 반드시 공익 옹호실 앞으로 서면을 발송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퇴는 공익 옹호실에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의 미래의 특정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한다. 공익 옹호실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퇴를 철회,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 C. 학생 위원

학생 위원의 사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장애학생과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도 담당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퇴는 수석 성취도 담당관에게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의 미래의 특정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한다. 수석 성취도 담당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퇴를 철회,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 IX. 공석

### A. 학부모 및 공익 옹호실 지명 위원의 공석 발생

- 만약 CCELL 위원이 본인의 임기 동안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통보하고 CCELL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직책에서 제명 된다.<sup>4</sup> 각각의 불참과 서면으로 제공한 이유는 회의의 공식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공익 옹호실에서 지명한 위원의 모든 불참은 CCELL의 업무 총괄(Administrative Assistant) 또는 회장이 공익 옹호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 없이 3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CCELL은 정기 회의에 해결 방안으로 공석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교육감(적용되는 경우 공익 옹호실)에게 이런 상황을 통보한다.
- 사퇴 또는 학부모 위원의 제명으로 CCELL에 공석이 발생하면 CCELL은 공개 회의에서 공석을 채운다. 학부모 위원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CCELL은 공석을 채우기 전에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의 학부모와 논의한다. 공익

<sup>4</sup> 다음과 같은 경우가 불참의 합당한 사유로 성립된다: 친척의 사망 또는 친척의 장례식 참석, CCELL 위원 자신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배심원 소환을 포함한 의무적인 법원 출석, 군인의 의무, CCELL 회의 불참을 피할 수 없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 및 기타 CCELL에서 적절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

옹호실에서 지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익 옹호실에서 남은 임기 동안 활동을 할 위원을 지명한다.

3. 만약 후보간에 동일한 표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60일 내에 CCELL에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투표로 위원을 결정한다. CCELL에서 기타 이유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이 공석을 채울 수도 있다.

#### B. 학생 위원 공석

학생 위원의 공석 발생의 경우에는 장애학생과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도 담당관이 수석 성취도 담당관이 개발한 절차를 활용하여 다른 졸업반 학생을 지명한다. 수석 성취도 담당관은 CCELL 및 가정참여 지원실에 본인의 지명 사실을 알린다.

#### X. 이의제기 절차

본 규정의 준수에 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지 5일 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XI. 기술적인 지원

가정참여 지원실에서는 본 규정서에 설명된 절차의 실행을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본 규정서에 관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한다:

전화:	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 Room 503 New York, NY 10007	팩스:
212-374-2323		212-374-0076